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- 산업통상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

◇ 제 · 개정 이유

- 존속기한 도과로 인해 실효된 동 명칭의 기존 훈령(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40호)을 폐지제정하고, 변경된 부처 명칭을 반영하며, 국민권익위원회의 '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' 중 일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◇ 주요내용

가. 기 실효된 훈령을 폐지하는 동시에, 동일·유사한 내용의 훈령을 제정*

* 존속기한 만료로 실효된 행정규칙이 계속 시행될 필요가 있다면, 해당 행정규칙을 폐지한 후 재발령하여야 함/ 법제처, '행정규칙 입안심사 기준'(2025), pp. 37-38.

나. 존속기한(유효기간) 조항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(안 제22조 개정)

다. 국민권익위원회 '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'* 반영(안 제2조, 제3조 등 개정)

*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상 '정의' 규정의 도입 및 적용범위 내용의 이동(제2·3조), 이첩 →이첩·송부(제15조), 조사(기관)→조사·수사(기관)(제9·14·16조), '공익신고자 보호 안내 대상'에 「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」을 준용하는 보호규정을 추가(제18조), 별지 서식의 일부 수정·보완 등

라. 변경된 부처명 반영(훈령 제명 및 안 제1조 등 개정)

마. 이 외 경미한 자구 및 오·탈자의 수정, 모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번호의 변경 등(안 제19조제2항제2호 등 개정)